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3. 2. 28 개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_____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위탁자가 법 제19조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다음의 퇴직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탁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에 가입한 수익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위탁자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위탁자와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6.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위탁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위탁자는 이 신탁의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전을 신탁하기로 합니다.

② 수익자는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 없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하는 금전 이외에 별도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의 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탁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었던 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별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하며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수익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수익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③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위탁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7조 (연금규약의 제출)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시에 수탁자에게 연금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변경할 내용을 수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보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보 및 연금규약의 제출지연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 (운용관리기관) ① 위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수탁자가 정한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수탁자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하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수익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하 "대기자금"이라 한다)은 수탁자 재량에 의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운용에는 적립금 이전을 포함합니다.

제10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신탁금의 지급) ①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은 수익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제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수탁자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중도인출 사유 발생 시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 세금징구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제13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금액에 가산하고 제12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4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6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
2.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수탁자의 사임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6조의 신탁보수가 2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③ 이 신탁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단,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8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 사임의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수탁자 사임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 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수탁자 사임으로 인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도록 합니다.

제19조 (신탁계약의 이전) ①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약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 생략 등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익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신탁계약이전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재산을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계약이전 받는 수탁기관에게 교부하고 사무인계 합니다.

④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단,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 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 일은 청산종료일의 익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신탁재산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위탁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3조 (일부 수익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위탁자가 제17조에 의한 중도 해지,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의 이전을 신청한 이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수익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존속하는 수익자에 대해 자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신탁재산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5조의 조세 및 제비용과 제16조의 신탁보수 및 기타 실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현금수납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징구합니다.

제24조 (계약의 승계)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퇴직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6조 (수익자 동의 요건) ① 제17조, 제19조, 제32조에서 정하는 수익자의 동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 동의 절차는 위탁자가 수행하여 그 확인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7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

고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는 위탁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신고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신고사항)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 (면책)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신탁과 관련한 제 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기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처리
2.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처리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7. 제3조제1항에 의해 위탁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8. 제3조제1항에 의해 위탁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 초과
9. 기타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32조 (계약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부속협정서를 작성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33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상위할 경우 법,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위탁자는 이 계약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④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4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관련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위탁자,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기타) 이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탁자는 위탁자, 운용관리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각각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주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26일부터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 까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신탁보수 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인)

은 행 주 소 :
성 명 : (인)

신탁관리인 주 소 :
성 명 : (인)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_____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이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보수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제2조(수수료 납부주체 및 징구방법) ① 제1조의 수수료 납부주체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② 위탁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구합니다.

1. 신탁보수

가. 신탁보수는 매년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연 0.30%를 곱한 금액을 매년 계약응당일에 현금으로 징구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9조에 의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이전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신탁보수의 계산기준일로 하며 적립금이전신청일,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이전신청일, 신탁종료사유발생일에 신탁보수를 현금으로 징구합니다. 이때, 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은 직전 신탁보수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신탁보수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보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미납발생일 1개월 이후부터 신탁보수를 납부할 때까지 자산관리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응당일에' 위탁자가 미납한 신탁보수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미납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점에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신탁보수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 경과 후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가'목 및 '나'목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가’목 및 ‘라’목의 신탁보수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③ 수익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구합니다.

1. 신탁보수

가. 신탁보수는 매년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연0.30%를 곱하여 계산하며, 수탁자가 매년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신탁보수는 계산기준일에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 취득하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재산 매각금액에서 신탁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탁자의 재량에 의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9조에 의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신청일, 계약서제12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발생일을 신탁보수의 계산기준일로 하며 적립금이전일, 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신탁보수를 취득합니다. 이때, 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은 직전 신탁보수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신탁보수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라. ‘가’목 및 ‘다’목의 신탁보수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할인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2. 제1호의 신탁재산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가입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인)

은 행 주 소 :
성 명 : (인)

신탁관리인 주 소 :
성 명 : (인)